

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10월 1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부천시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장 양재성)

가. 제안이유

- 「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일부개정(조례 제2407호, 2009. 8. 3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회계공무원의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식품진흥기금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관,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함.(안 제14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기금지출 주요 용도는?</p> <p>○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무 관련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임. 기금사업으로 엑스포행사시 갖는 떡행사는 기금사업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사례임. 심사숙고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</p>	<p>○ 시설개선용자금, 위생감시원, 복사골일품업소 인센티브 등 위생 관련 업무에 집행되고 있음.</p> <p>○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금운용관: 부천시보건소장
2. 분임기금운용관: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및 부천시소사보건소장·부천시오정보건소장
3. 기금출납원: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 및 부천시소사보건소·부천시오정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원미구보건소”를 “부천시보건소”로 한다.

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원미구보건소장”을 “부천시보건소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”을 “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89호
의결 년월일	2009. 11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0. 5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일부개정(조례 제2407호, 2009. 8. 3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회계공무원의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식품진흥기금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관,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함.(안 제14조제1항)

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금운용관: 부천시보건소장
2. 분임기금운용관: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및 부천시소사보건소장·부천시오정보건소장
3. 기금출납원: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 및 부천시소사보건소·부천시오정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원미구보건소”를 “부천시보건소”로 한다.

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
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원미구보건소장”을 “부천시보건소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”을 “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: 원미구보건소장</p> <p>2. 분임기금운용관: 원미구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및 소사·오정구보건소장</p> <p>3. 기금출납원: 원미·소사·오정구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기금운용관: 부천시보건소장</p> <p>2. 분임기금운용관: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및 부천시소사·부천시오정보건소장</p> <p>3. 기금출납원: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 및 부천시소사·부천시오정보건소 식품위생업무담당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소재지)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<u>원미구보건소</u> 안에 둔다.	제2조(소재지) ----- ----- <u>부천시보건소</u> -----.

**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
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원미구보건소장</u> 이 된다. ③ (생 략) 1.~6.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 <u>부천시보건소장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1.~6.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</u> 이 된다.	제9조(간사 등) ----- ----- ----- <u>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</u> -----.